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

## 1. 주요 내용

- 가. **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(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86조제11항 신설)**  
사업주에게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,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나. **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(안 제37조제2항)**  
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/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.
- 다. **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(안 제241조2 신설)**  
근로자에게 연면적 1만 5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에서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하였습니다.
- 라. **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(안 제420조제1호, 별표 12 제1호 및 제2호)**

유해성 증거가 충분한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, 발암성 등과 관련한 국제 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,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## 마. 개인선량계<sup>1</sup>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(안 제574조제2항 신설)

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해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## 바.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(안 제619조, 별표18 제18호)

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을 확인해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,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에 포함해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## 2. 다운로드 :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\(2017. 3. 3. 시행\)](#)

<sup>1</sup> 개인선량계는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,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,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,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등이 있습니다.